

FTA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해외통관애로

RCEP 관련 일본 동향 및 수출입업체 유의사항

이나애 주일본 한국대사관 관세관

RCEP 관련 일본 동향 및 수출입업체 유의사항



이나애
주일본 한국대사관
관세관



● ① 들어가며

올해는 일본과 최초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해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뒤늦게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규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지적재산 등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여 역내 무역투자 촉진 및 공급망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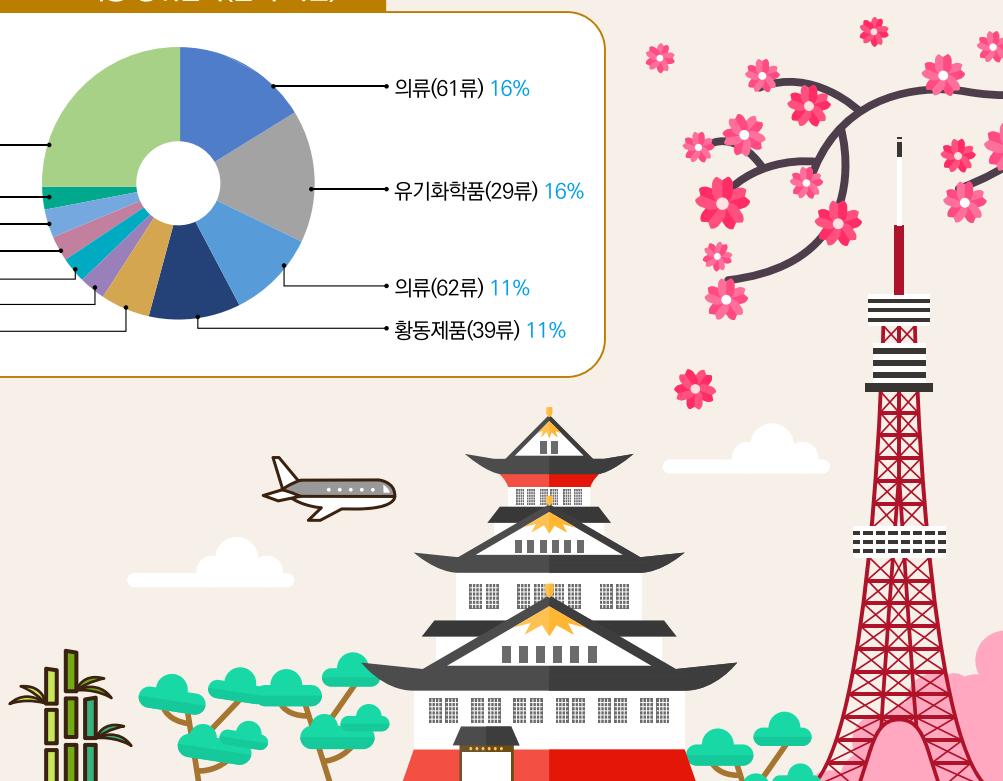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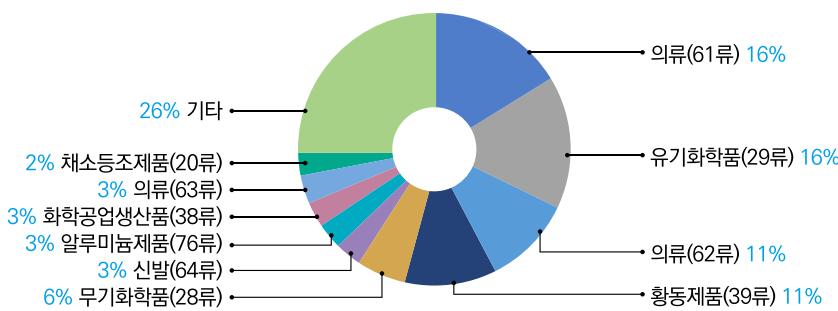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이번 RCEP 발효를 계기로 일본 진출을 확대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관련 주요 동향과 수출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②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RCEP 활용현황

RCEP은 올해 1월 발효된 후 일본 전국 세관에서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1~2월 간 활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RCEP 적용 수입물품(총 2,910억엔)의 대부분이 중국발 화물로 93.7%(2,727억엔)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1일자로 발효된 점을 감안하면 공개된 자료에서 우리나라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2%(122억엔) 수준에 불과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10%

증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도쿄세관 원산지센터에 따르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산 RCEP 활용 물품도 수입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국과 우리나라 외에도 베트남(41억엔)과 태국(17억엔)에서 상당규모의 물품이 RCEP을 활용하여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기타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RCEP 적용 상위품목(금액 기준)



● ③ RCEP 원산지증명서 미비시 일본 세관의 처리기준

일본 세관은 원칙적으로 RCEP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에 의심이 없고 수입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에서의 RCEP 활용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점은, 사소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면 일단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사후검증을 통해 실질을 보도록 정한 협정들과는 달리, 수입통관시 협정 우선적용 및 사후검증 원칙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관심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통관시일이 길게 소요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오류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세번과 일본으로 수입통관시 적용되는 HS세번이 다르더라도 이하에 언급될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명백하게 역외산이 아니라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간주된다.

- ① HS버전 차이로 세번이 달라진 경우(예 : HS2022가 적용되어야 하나, 원산지증명서에 HS2012 기준 세번 기재)
- ② 원산지기준이 완전생산 또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한 경우
- ③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이 세번 변경, 부가가치, 화학반응이고, 수입신고 적용 세번과 원산지증명서 기재세번에 해당하는 품목별 규칙이 동일한 경우

품목별 규칙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사례(A)

일본 적용세번 : 2103.90
 원산지증명서 기재 : 세번 0910.91, 원산지기준 RVC
 품목별 규칙 : 2103호(CC 또는 RVC40)
 0910.91(CC 또는 RVC40)

품목별 규칙이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 사례(B)

일본 적용세번 : 62.03
 원산지증명서 기재 : 세번 61.03, 원산지기준 CTC
 품목별 규칙 : 62류(CC)
 61류(CC)

(비고)

B사례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해당 물품의 제조에 61류의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62류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다만, 62류의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빙 가능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④ 자료에 근거하여 RCEP 원산지 제품임을 소명 가능한 경우(예 : 문서에 의한 원산지 사전교시 포함)

이중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세 번째 항목이다. 일본 세관에서 품목별 규칙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원산지기준이 동일한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HS세번 다툼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사전교시 등을 활용

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교시)

-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감면세의 4개 분야에 대해 일본 세관이 사전에 조회신청을 받아 회답해 주는 제도
- 한 번 회신 받은 내용은 물품 자체 혹은 관련 규제의 변경이 없으면 최장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통관시간 단축 가능
- 단, 문서 형태로 교부받은 회신내용만 인정되며, 구두 혹은 이메일 등은 효력없음



→ ④ RCEP 원산지증명서 사후보완

일본에서는 수입 사전허가제도를 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은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일본 국내로의 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 수입 시 RCEP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전에 반드시 원산지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를 사후에 보완하여 입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에, 수입허가 전 반출제도(BP ; Before Permit)를 활용하면 사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허가 전에 물품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겠다는 의향을 반드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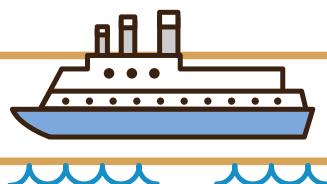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 동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특혜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본 현지 수입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물품 거래 시에 충분히 강조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수입허가 전 반출제도(BP ; Before Permit)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거나 세관 통관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예: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지연)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액을 납부하고 세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수입허가 전 물품반출 가능
- 단, 수입신고시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여야 함

→ ⑤ 맷음말

일본은 물품 통관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는 문화로 인하여 수출입기업에게 까다로운 나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관의 자의적인 법 규정 해석은 거의 없으므로 수출입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한다면 다른 나라보다 낮은



불확실성 하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RCEP 발효에 따른 원산지 관리 뿐 아니라 일본 세관 통관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RCEP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